

2023.03.16.

대체공휴일 추가확대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

공인노무사 김재언

2023년 3월 15일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되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입법안이 통과하는 경우 빠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대체 공휴일확대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말합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일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고안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 > 5월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부여

2.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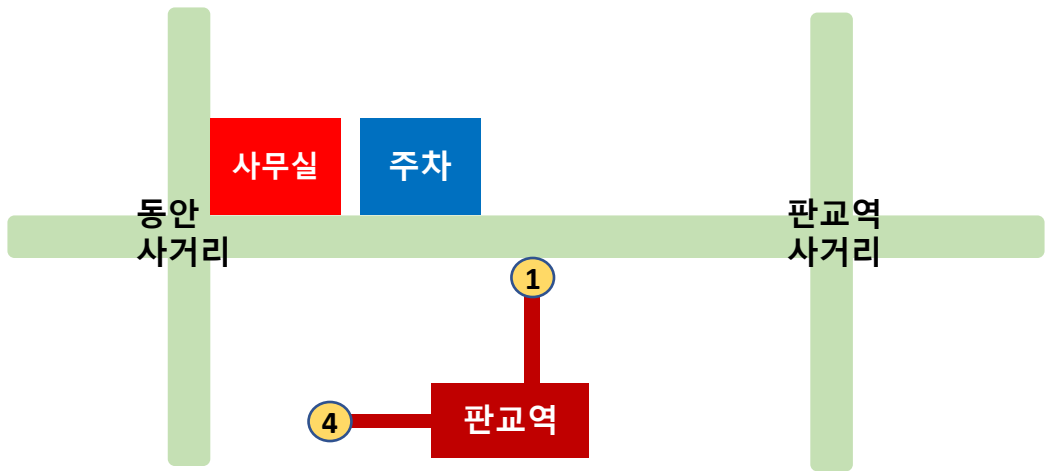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아울러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올린 상태라면, 연차휴가를 반려하고 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운영방안 요약	
근로제공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또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근로제공시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불가
휴일부여와 임금계산	<월급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하지 않음 <시급제 및 일급제> 별도 유급으로 처리

[참고] 대체공휴일 확대 변천사

연 도	내 용
2013.11.05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021.08.04	-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023년 (예정)	-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daum.net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leebin@naver.com